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(제83조제2항 관련)

| 구 분 | 기 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생산 | |
| 가.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|
| 나.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|
| 2. 판매 | |
| 가.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 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 반차량 1대 이상 |
| 나.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를 판매하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|
| 다.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|
| 3. 사용 | |
| 가.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 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|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|
| 나.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를 사용하는 경우 |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 측정기 각 1대 이상 |
| 4. 이동사용 | |
| 가.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경우 | 1) 방사선투과검사 장비: 5대 이상 2) 방사선 측정장비 가) 방사선측정기: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1대 이상 |

- 나) 방사선경보기: 방사선작업종사 자 1명당 1개 이상
- 다) 직독식개인선량계: 방사선작업 종사자 1명당 1개 이상(방사선경 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)
- 3) 방사선 방호장비
 - 가) 콜리메이터(10밀리미터 이상):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외한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1대당 1개 이상
 - 나) 경고등: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 대당 4개 이상
- 4) 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: 2대 이상 (승용차는 제외한다)

나. 가목 외의 경우

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